

민간위탁 관리지침·매뉴얼 개정 주요사항

I. 민간위탁사무 책임성 강화 / II. 민간위탁 노동자 처우개선 / III. 위·수탁자 간 상호협력 강화

I. 민간위탁사무 책임성 강화

I-① 민간위탁 남용 방지를 위한 민간위탁사무 사전검토 강화

-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위탁사무 적정성 심의 시 ① 직영(용역 등) ② 투자출연기관(대행·고유사무) 사무 추진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 심의

I-② 수탁기관 선정기준 개선

- 수탁기관 선정 시 결격사유를 조희하여 사업비 횡령, 성범죄 등 중대 비위 발생기관은 수탁기관 선정에서 배제(협약 배제 의무화)
- 최근 3년간 감사(회계감사 등), 지도점검, 종합성과평가 지적사항을 심의하여 제안서 평가에 반영 — 정성적 평가점수에 **최대 -7점 감점** 적용
- 감점기준(예시) — 수당 등 부정수급(-1점 이상), 사업비 집행 부적정·환수액 발생(-0.5~-1점), 채용과정 절차 위반(-0.5점), 사업계획의 중대한 사항 미이행(-0.5~-1점),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(-0.5~-1점), 복무위반(-0.3~-1점), 서류미비 등 단순 절차위반(0~-0.1점)
- 신규업체 진입장벽 완화 — 정량적 평가비율 축소, 정성평가 위주 배점 구성 원칙, 정량평가 급간 배점 최소화

재위탁 시 공개모집으로 전환(재계약 불가)해야 하는 경우 명시

- ① 종합성과평가 결과 60점 미만 / ②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 / ③ 위탁기간 중 지도·점검, 종합성과평가, 감사 결과 동일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시정조치하지 않은 경우 / ④ 위탁기간 중 법인·시설 종사자가 성희롱·성폭력, 인권침해, 사업비 횡령, 부당 노동행위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(③·④ 해당 여부는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)

I-③ 지도·점검 체크리스트 지표 개정

-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여부, 4대보험료 예수금 별도계좌 납부·반납 여부, 견적서·비교견적서 확인, 회계감사·종합성과평가 지적사항 개선 여부 지표 신설

I-④ 위·수탁 협약 시 「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」 제출 의무화

I-⑤ 위탁시설 임차료 민간위탁금 편성 금지

- 시설 임차료는 서울시 직접 집행 — 월세는 사무관리비, 보증금은 기타자본이전 (수탁기관에 법인세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예산편성·집행원칙 규정)
- 회계감사 시 사업 주관부서에서 회계 감사인 지정(수탁기관의 감사인 지정으로 조례 제15조제7항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규정)

II. 민간위탁 노동자 처우개선

- 재위탁·재계약 시 「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(고용노동부)」 이행현황을 민간위탁 운영평

가위원회에서 심의

- 노동자 근로조건 관련 내용 위반 시 협약 해지 가능사항을 협약서에 명시
- 수탁기관 선정 시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사항(노동관계법령 준수,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)을 평가기준에 반영
- 「종사자 권익보호 이행 서약서」를 「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」로 명칭 변경·내용 개정 —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·하도급·파견 금지조항 신설(제3조), 「산업안전보건법」·「남녀고용평등법」·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의무 추가(제4조). 모집 공고에 확약서 미이행 시 계약 해지 가능사항 명시
- 노동자 30인 이상 수탁기관은 노사협의회 의무 운영(30인 미만은 권고) — 노동자위원·사용자위원 각 3명 이상 10명 이하 동수 구성

Ⅲ. 위·수탁자 간 상호협력 강화 (표준협약서 개정)

- 「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가이드라인(‘20. 9., 행정안전부)」 등 반영 — 시와 수탁기관 간 상호협력에 기초한 협약 기본원칙 신설(제2조), 사업계획 변경·사무편람 개정 시 사전 협의절차 명시(제6조·제7조), 지도·점검에 따른 시정조치 시 수탁기관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(제16조)
- 「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(‘19. 12., 고용노동부)」 적용 — 협약에 명시된 근로조건 관련 사항 위반 시 협약 해지 가능(제9조), 근로계약 체결 시 수탁기간과 동일한 근로계약기간 설정 권고(제9조)
- 수탁기관·수탁기관 노동자 인권보호 항목 신설 — 위탁사무 수행 중 발생한 인권침해·차별행위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」에 따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조사·출석요구(제10조)
- 위탁기관·수탁기관·수탁기관 노동자 간 사무별 소통창구(위·수탁 3자협의회, 정기 간담회 등) 마련 권고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2020년 개정사항 반영 — 협약서 공증의무 규정 삭제(조례 제11조), 위탁사무 처리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·부당한 경우 정지·해지 가능(조례 제16조), 협약 해지 이후 조치 명시(조례 제19조)